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5. 23 선고 2021가합102558(본소), 2021가합102565(반소) 판결
[공사대금 · 부당이득금 등 반환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백재승

피고(반소원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애련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창주

변론 종결2024. 4. 18.

판결 선고2024. 5. 2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421,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3.부터 2024. 5.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3/4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95,724,2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7,432,10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 4, 7 내지 17, 29, 31, 34 내지 39호증, 을 제8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철물구조 제조 및 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19. 5. 9.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D공사 중 방음벽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30,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9. 7.경 위 공사 중 방음벽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6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9. 8. 2.부터 2019. 12. 15.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 한다), 2019. 12. 6. 공사기간을 2020. 6. 5.까지 연장하고 계약금액은 그대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최초 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선금금 143,000,000원과 기성금 419,950,000원 합계 562,950,000원(= 143,000,000원 + 419,9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0. 9.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 공사대금 635,307,75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562,9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72,357,750원(= 635,307,750원 - 562,9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457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도급인은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도급인이 기성고에 따라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65391, 2003다65407 판결 등 참조).

2) 기성 공사대금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0. 9.경 이미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을가 제37,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20. 9. 21.경 원고에게 피고가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할 것을 통보하였고 2020. 10. 7.경 E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청구한 점, ② 피고가 2020.

10.경부터 직영으로 공사를 한 점, ③ 원고도 2020. 8.경부터는 기성대금을 청구할 정도로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0. 22.경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제 당시까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기성 공사대금의 범위 이 사건 공사대금이 731,500,000원(= 665,000,000원×1.1, 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가로 합계 562,950,000원(= 선금금 143,000,000원 + 기성금 419,9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감정인 F(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시점에 가까운 2020. 10. 10.경에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는 533,882,927원, 완성되지 않은 부분 공사비는 80,812,816원으로, 기성고율은 86.85%{= 533,882,927원 ÷ 614,695,743원(= 533,882,927원 + 80,812,816원) × 10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기성 공사대금 635,307,750원(= 약정 총공사비 731,500,000원 × 기성고 86.85%)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금액 합계 562,9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2,357,750원(= 635,307,750원 - 562,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약정 총공사비가 아닌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전체 공사비 676,165,317원이나 피고가 C과 체결한 계약변경내역서의 단가에 87%를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하자보수비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인용)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나 미시공한 부분이 있으므로, 기성 공사대금에서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비용이 상계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미시공 또는 하자가 각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보수비용이 합계 19,935,828원¹⁾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기성

공사대금 채권에서 피고의 하자보수비 채권 19,935,828원²⁾이 상계되어야 한다.

1	캡앵글 미 설치	1,351,244	기성고에 적용
2	캡플레이트 미 설치	2,329,835	
3	스프링클립 미 설치	2,329,866	
4	콘크리트블록 미 설치	2,480,500	
5	전철주 흡음판 미 시공	-	
6	지주 콘크리트 속채움 미 시공	3,211,514	-
7	지주 상부 빔 돌출	677,572	
8	선형 변경	4,357,864	
9	지주방청 및 녹 제거	3,197,433	
10	스프링클립 재 설치	-	3항에서 일괄 산정
합계	19,935,828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G 및 H에 대한 직불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기각) 가)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재하수급인인 G에게 직불한 7,612,000원 및 H에게 직불한 11,000,000원 합계 18,612,000원(= 7,612,000원 + 11,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을가 제24, 31, 43호증의 1, 44,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G, H 사이에 작성된 2020. 6. 24.자 합의서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20. 7. 21.자 직불동의서에 의하면, 원고가 2020. 7. 21. G에 관한 11,000,000원, H에 대한 14,00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의 직접 지급에 동의한 사실이 있으나(위 금액이 5차 기성금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G에 대한 직불금 7,612,000원 및 H에 대한 직불금 11,000,000원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특히 G에 대한 직불금 7,612,000원에 관하여 피고와 G 사이에 작성된 2020. 7. 20.자 잔금정산합의서에도 '2차 지급금액 : 6,920,000원(공제)'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점, ④ G와

H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직불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중단된 공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G와 H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채권액이 혼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G와 H에 대한 위 각 직불금 상당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I 및 J에 대한 직불금 또는 양수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기각) 가) 피고는 원고의 재하수급인인 I와 J에게 직불한 1,210,000원(= I 550,000원 + J 660,000원) 및 피고가 I와 J로부터 양수한 I와 J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C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성대금으로 I와 J에게 지급한 4,570,000원(= I 2,140,000원 + J 2,43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가 I 및 J에 직접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와 J가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직불금 지급에 관하여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리고 피고가 I 및 J로부터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는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가 제47, 48, 6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20. 10. 30. I로부터 I의 원고에 대한 3,300,000원 상당의 장비대금채권을 양수한 사실, ② 피고가 2020. 11. 5. K(J)으로부터 K(J)의 원고에 대한 3,765,85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사실, ③ C이 2021. 2. 10. I에게 2,140,000원을, 같은 날 K(J)에게 2,43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I 및 J에 대한 위 양수대금 상당의 장비대금 내지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의 L 등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직불금 공제에 관한 판단(기각) 가)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재하수급인들인 L 등에게 직불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급인인 C이 지급한 합계 77,426,000원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C이 L 등 나머지 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L 등 업체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원고가 C의 직불 지급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가 제50 내지 59호증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후 피고와 L 등 업체들 사이에 작성된 확인서와 직접지급합의서 또는 L 등이 2021. 1. 27.경 내지 2021. 1. 28.경 피고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대금이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인지 원고의 공사 중단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마무리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결론 가) 상계의 자동채권인 피고의 하자보수비 채권과 원고의 기성 공사대금 채권은 모두 적어도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된 2020. 10. 22.경 성립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피고의 위 각 채권은 2020. 10. 22. 무렵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2023. 6. 13.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23. 6. 14.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이에 따라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 채권 72,357,750원은 자동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비 채권 19,935,828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적상일인 2020. 10. 22. 무렵에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기성 공사대금 채권은 52,421,922원(= 72,357,750원 - 19,935,828원)이 남게 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상계되고 남은 기성 공사대금 52,421,92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0. 10.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미시공하였거나 시공한 부분에 대한 시공비 내지 하자보수비용 19,935,828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G 및 H에게 직접 지급한 직불금 18,612,000원, 피고가 원고의 재하도급업체들로부터 양수하거나 원고를 대신하여 직접 지급한 83,206,000원의 합계

121,753,828원(= 19,935,828원 + 18,612,000원 + 83,20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하자보수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2. 다.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하자보수비 채권은 원고의 기성 공사대금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위 2. 다. 2)항 내지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원고의 G와 H, I와 J, L 등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 관련 채무가 존재한다거나 원고가 피고 또는 C의 직불금 지급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하선화

판사이연용

판사황동준

1) 감정인의 2023. 5. 3.자 감정서의 하자 보수비 집계표상 합계가 19,935,827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9,935,828원의 오기로 보인다.

2) 피고는 2023. 6. 13.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3면에서 감정인의 감정서에 따른 하자보수비로 19,935,327원을 주장하였는데, 이 역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 보수비인 19,935,828원의 오기로 본다.